

1. 개정이유

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「의료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「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」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,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(안 제2조·제3조 제1항)

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.

나.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(안 별표 제1호)

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.

다.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(안 별표 제2호나목)

비대면진료 대상환자,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.

라.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(안 별표 제2호마목)

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·인증, 개인정보 처리, 중개매체 제공·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,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부내 의견조치 및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예정

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의료인·간호조무사·의료유사업자·의료기사·보건의료정보관리사”를 “의료인·간호조무사·비대면진료 중개업자·의료유사업자·의료기사·보건의료정보관리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료인·간호조무사·의료유사업자·의료기사·보건의료정보관리사”를 “의료인·간호조무사·비대면진료 중개업자·의료유사업자·의료기사·보건의료정보관리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한다.

1.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정명령: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2.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: 보건복지부장관

별표 제1호가목1) 중 “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”을 “등록취소, 의료기관 폐쇄 또는 신고수리 취소인”으로, “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처분”을 “등록취소, 의료기관 폐쇄 또는 신고수리 취소 처분”으로 하고,

같은 호 라목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감정대상	감정기준		
	자격정지·업무	면허취소	허가취소·등록취
	정지 또는 영업		소·신고수리 취
	정지		소 또는 폐쇄

별표 제2호나목에 7)부터 29)까지를 13)부터 35)까지로 하고, 같은 목에

7)부터 12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)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	법 제63조제1항	시정명령
8)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종류, 처방 일수 등의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	법 제63조제1항	시정명령
9)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신설	법 제63조제1항	시정명령
10)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	법 제63조제1항	시정명령
11) 법 제34조의3제4항을 위반	법 제63조제1	시정명령

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,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한 경우	항	
12) 법 제3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제1항	시정명령

별표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「의료법」(이하 아 표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을 위반한 경우

위 반 사 항	근 거 법 령	행정처분기준
1)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·운영한 경우	법 제64조제4항제1호	신고수리 취소
2) 법 제34조의8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제1항	시정명령
3) 법 제3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제1항	시정명령
4)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	법 제64조제4항제2호	• 1차 위반 : 영업정지 1개월 • 2차 위반 : 영업정지 3개월 • 3차 위반 : 영업정지 6개월
5) 법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	법 제64조제4항제3호	• 1차 위반 : 영업정지 6개월 • 2차 위반 : 영업정지 12개월 • 3차 위반 : 신고수리 취소

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6) 법 제34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·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7) 법 제34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8)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3조제1항 법 제63조제1항 법 제64조제4항제4호	시정명령 시정명령
가) 법 제34조의8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) 법 제3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) 법 제34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·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라) 법 제34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		· 1차 위반 : 영업정지 1개월 · 2차 위반 : 영업정지 3개월 · 3차 위반 : 영업정지 6개월 · 1차 위반 : 영업정지 1개월 · 2차 위반 : 영업정지 3개월 · 3차 위반 : 영업정지 6개월 · 1차 위반 : 영업정지 1개월 · 2차 위반 : 영업정지 3개월 · 3차 위반 : 영업정지 6개월 · 1차 위반 : 영업정지 15일 · 2차 위반 : 영업정지 1개월 · 3차 위반 : 영업정지 3개월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 범위) 「의료법」, 「간호법」 및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의료관계법령”이라 한다)을 위반한 <u>의료인 · 간호조무사 · 의료유사업자 · 의료기사 · 보건의료정보관리사</u> 및 <u>안경사</u> (이하 “의료인등”이라 한다)와 <u>의료기관 · 치과기공소 · 안경업소 · 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</u> (이하 “의료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적용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료인 · 간호조무사 ·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· 의료유사업자 · 의료기사 · 보건의료정보관리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행정처분기관) ① <u>의료인 · 간호조무사 · 의료유사업자 · 의료기사 · 보건의료정보관리사</u> 및 <u>안경사</u> 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.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행정처분기관) ① <u>의료인 · 간호조무사 ·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· 의료유사업자 · 의료기사 · 보건의료정보관리사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한다.</u> 1.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: <u>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</u>

장 · 군수 · 구청장

2.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신고

의 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:

보건복지부장관